

예 산 총 칙

2018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78,604,231	11,358,127
일반회계	353,640,449	10,609,213
특별회계	24,963,782	748,913
기타특별회계	24,963,782	748,913
상수도사업특별회계	5,724,302	171,729
수질개선특별회계	14,329,735	429,892
의료보호특별회계	370,242	11,107
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	4,539,503	136,185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,700,000천원이고 재난·재해예비비는 45,041,039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